

제316회 정례회
2012. 12. 2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20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2년 12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6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3일

(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정지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NGO센터 운영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, NGO센터 사용단체의 편의를 위해 사용료 징수금액을 NGO센터 운영규정으로 위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NGO센터 운영위원의 수(안 제7조 제2항)
- 15명 이내 → 20명 이내

○ 이용료(제8조제2항)

- 그 밖의 시설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개소한 NGO센터의 운영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, NGO센터 사용단체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그 밖의 시설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NGO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5인”을 “20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그 밖의 시설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운영 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운영 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이용료) ① (생략)</p> <p>② 그 밖의 기타시설 이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</p>	<p>제8조(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그 밖의 시설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